예 산 총 칙

2019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73,198,801	17,195,964
일반회계	516,581,688	15,497,451
특별회계	56,617,113	1,698,513
공기업특별회계	28,811,359	864,341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3,993,888	719,817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4,817,471	144,524
기타특별회계	27,805,754	834,173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025,661	30,770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53,631	4,609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	417,130	12,514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383,082	11,492
주차장 및 주정차사업 특별회계	3,591,300	107,739
주택사업 특별회계	1,693,742	50,812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1,316,995	39,510
홍성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100,000	3,000
역재방죽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26,550	797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19,097,163	572,915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	500	15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491,895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3,9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